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. 4. 27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4. 27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5. 7) 상정

○ 제9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. 5. 7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제안이유

○ 행정기관의 「주5일근무제」지법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하고,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함

주요골자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1항)
○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,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 토록 함(안 제20조제2항)

【산출방식】

12월 - 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

×

당해연도 연가일수

12월

○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2001.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

정비함(안 제2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91호
의결년월일 (제95회)	2002. 5. 10

제출년월일 : 2002. 4. 2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하고,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」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,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」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, 토록 함(안 제20조제2항)

【산출방식】

12월 - 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

×

당해연도 연가일수

12월
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2001.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제22조)

개정조례(안)

- 따로 복임

신·구조문대비표

- 따로 복임

관계법령 발췌서

- 행자부 운영12100-274(2002. 3. 23)호와 관련임

관련사업 계획서

- 해당없음

예산수반 사항

- 해당없음

사전예고 결과

- 해당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 제목 중 “토요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로 하고 동조제1항 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”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

$$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<u>토요전일근무제</u>)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	제16조의2(<u>토요전일근무제</u>) ①..... <u>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u> ② <u>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u>
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<u>결근일수·휴직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u>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.5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 미만은 절사한다. (신설)	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<u>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u> ② <u>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.</u>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.5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 미만은 절사한다. 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 $\frac{12월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월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
②(생략) ③(생략)	③(현행과 같음) ④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공가)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
1.~4. (생략)

5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

6.~8. (생략)

제22조(공가)
.....
.....

1.~4. (현행과 같음)

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6.~8. (현행과 같음)